

11.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령(안)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 제1997-408호 1997. 11. 21

주 요 골 자

- 가. 이제까지는 시·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 지정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면적을 100만제곱미터미만으로 하였으나, 앞으로는 3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여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.
- 나. 산업단지 지정·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 구비서류·협의기간 등 협의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.
- 다.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후 1년이상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경쟁입찰을 통하여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, 경쟁입찰결과 사업시행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, 필요한 경우 임대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투자비 회수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고, 입주기업은 쌍 값에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.

개 정 이 유

「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전략」추진계획에 따라 시·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정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면적을 확대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